

대전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가단121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김현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문경시 D 전 3,405㎡ 중 3,921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 2020.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7. 30. 접수 제107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가) C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월급을 초과하는 돈을 대부업체와 지인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15. E 대전공장 사내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대부터 2019.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은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9. 16. 징역 5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863)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2. 4. 28. 327,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토지 처분 및 당시 재산상태

가) 한편 C은 2019. 6. 28. 채무원리금(원고에 대한 채무 포함) 합계액을 484,294,826원, 보유재산(문경시 D 전 3,405㎡ 중 3,921분의 6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포함) 합계액을 65,124,421원으로 채무 및 재산내역을 신고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2019개회21066)을 하였으나 2020. 2. 14.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G는 2020. 7. 7.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H)을 받아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나 2020. 7. 20. C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C의 미지급 카드대금과 비용 등을 변제받고 2020. 7. 23.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C은 위 강제경매개시신청 취하 다음 날인 2020.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20. 7. 3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3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당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은 2019. 6. 28.경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위 매매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변 시세에 따라 2020년 공시가격보다 높은 적정 금액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 2) 살피건대 C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지 수개월 후 G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피고가 2020. 7. 20. G에 C의 미지급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고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다음 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의 동생인 피고로서는 카드대금 대납을 요청하게 된 경위, 나아가 그 당시 C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C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매매가가 적정한 것이었고 실제로 매매대금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피해금(원)
1	2015. 10. 15.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E 대전 공장	원고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송금 받음	1,500,000
2	2016. 2. 11.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C 주거지	원고에게 "나에게 2억 5천만원 정도의 집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며칠만 쓰고 예전에 빌린 것까지 합해서 갚겠다. 내 어머니도 재산이 2억 원 정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피해금(현금)을 교부 받음	8,200,000
3	2016. 2. 29. C 주거지	원고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줘라, 잠시만 쓰면 된다. 내가 이자도 내주고 원금도 갚아 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2. 26. 'K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40,000,000
4	2016. 2. 29.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조합 용정지점	원고에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줘라, 잠시만 쓰면 된다. 내가 이자도 내주고 원금도 갚아 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N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30,000,000
5	2016. 10. 6.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조합 용정지점	원고에게 "K은행 및 N회사의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원고로 하여금 'O'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4,000,000
6	2016. 11. 25.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M조합 목상지점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6. 11. 24. 'Q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음	37,000,000
7	2017. 1. 16. C 주거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6,900,000

8	2017. 3. 16. 대전 서구 R빌딩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고 원고를 차에 태워 'R건물'로 데려가 'S보험'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8,000,000
9	2017. 4. 19. 불상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T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20,000,000
10	2017. 4. 19. C 주거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S보험'에 전화를 하게 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10,000,000
11	2017. 6. 19. C 주거지	원고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네 대출금을 갚으려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대부업체 한 군데에서 목돈을 대출 받아 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조금씩 나누어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U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100,000,000
12	2017. 8. 23.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조합 용정지점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대출을 해주면 너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V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3,500,000
13	2017. 8. 23.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조합 용정지점	상동	8,000,000
14	2017. 9. 25. 불상지	원고에게 "U회사에서 대출 받은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자가 조금 더 싼 곳에서 대출 받아 주면 내가 알아서 갚겠다, 내 어머니에게 재산이 2억원 정도 있고, 정 안되면 내 집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W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10,000,000

15	2018. 5. 30.부터 2018. 5. 31. C 주거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Q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 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700,000 (2018. 5. 30.)
			17,400,000 (2018. 5. 31.)
16	2018. 10. 16. C 주거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X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 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12,000,000
17	2019. 6. 20. C 주거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번 호 1 생략))로 송금 받음	10,000,000
총 17회 합계 327,200,000원			

